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미래의 구상·준비를 전담하는 통일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을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전담하는 통일협력국으로 분리·개편하며, 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을 감축하며, 북한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관 2명을 정보분석국에 두고,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실·국장급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23. ~ 8.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정보분석국 및 통일협력국”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10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일·대북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통일·대북정책의 분석·평가
3. 통일·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4.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총괄·조정
5. 통일·대북정책 관련 여론 수립 및 모니터링
6. 통일·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

립·종합·조정

8.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9.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0.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1.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수립·시행
1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15.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10조의2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를 각각 “이산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인도적 대북지원”을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으로, “등”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4호까지 중 “인도적 대북지원”을 각각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통일협력국) ① 통일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국내외 통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4.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5. 통일·대북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6.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등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8. 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9.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10.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남북회담본부”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북 협상 대응전략 및 훈련계획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대화·교류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남북대화 및 출입에 관한 긴급상황 처리 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남북대화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등 남북대화의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7. 남북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8.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판문점 등 북한 간 출입과 관련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운영 및 출입·보안·통제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운용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및 조정
12. 남북교류 및 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의 수립
14. 남북교류 통계·동향의 종합·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남북교류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수립 및 현안대응

16.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령상 각종 승인·조정·수리 등에 관한 사항
17. 남북한이 합의하는 협력지구의 개발·관리·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정 및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본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한다.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둔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의2(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30명”을 “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9명을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6조 중 “1개”를 “3개”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제목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기획관”으로,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를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로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통일미래추진단)”을 “(통일미래추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통일미래추진단을”을 “통일미래추진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미래추진단에 단장”을 “통일미래추진과에 과장”으로, “단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미래추진단장”을 “통일미래추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수립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과제 연구·수립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수립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관계 부처·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

7. 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연구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통일미래추진단”을 “통일미래추진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09”를 “273”으로 하고,

별표 2 중 총계 “228”을 “184”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338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

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각각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충원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별표 4]

신·구조문대비표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관련)

1. 통일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통일미래추진과(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이하	7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 일부장관 소속 하에 <u>남북회담본 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 소, 남북출입사무소, 북한인권 기록센터 및 한반도통일미래센 터를 둔다.</u> ② (생략)	제2조(소속기관) ①----- ----- ----- <u>남북관계관 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무소</u> ----- ----- -----.
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에 운 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인권인 도실, <u>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둔다.</u> ②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 ----- --- <u>정보분석국 및 통일협력국</u> -----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22. (생략) <u><신설></u>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운영</u> 9. ~ 22. (현행과 같음) <u>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u>

23. (생략) 제10조(통일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운영 4.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5.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6.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8.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법령·제도의 개선·연구 9.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0. 11. 삭제 12. 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리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제10조(통일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통일·대북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통일·대북정책의 분석·평가 3. 통일·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4. 통일·대북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총괄·조정 5. 통일·대북정책 관련 여론수렴 및 모니터링 6. 통일·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7.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조정 8.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9.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2의2.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3. 국민 참여·소통을 통한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13의2.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법령의 수립·시행 13의3. 통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관리 14. 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5. 통일 미래전략·구상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6.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7.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홍보 18.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법령의 수립·시행 19. 국내외 통일 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제10조의2(인권인도실) ①·② (생략)	10.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시행 11.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수립·시행 13.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15.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10조의2(인권인도실) ①·② (현행과 같음)
---	--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u>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9. <u>이산가족</u> ----- -----
10. <u>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u>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0. <u>이산가족</u> ----- -----
11. <u>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u>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1. <u>이산가족</u> ----- -----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u>인도적 대북지원</u> 에 관한 사 업의 기획·조정 및 승인 등	17. <u>대북지원 및 개발지원</u> ----- ----- 등에 <u>관한 사항</u>
18. 남북한이 합의한 <u>인도적 대 북지원</u> 사업의 추진 및 종합 · 지원	18. ----- <u>대 북지원 및 개발지원</u> ----- -----
19. <u>인도적 대북지원</u> 관련 합의 의 이행에 관한 사항	19.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20. <u>인도적 대북지원</u> 에 관한 통 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20.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21. <u>인도적 대북지원</u> 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 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1.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
22. <u>인도적 대북지원</u> 과 관련된	22.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반입 에 관한 승인·조정	----- -----
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 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 · 단체의 <u>인도적 대북지원</u> 에 관한 기획·조정 및 협력·지 원	23. ----- ----- ----- <u>대북 인도지원 및 개 발지원</u> ----- --
24. <u>인도적 대북지원</u> 에 관한 정 책 연구 및 조사 등	24. <u>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u> -----
25. ~ 29. (생략)	25. ~ 29. (현행과 같음)
제11조(<u>정세분석국</u>) ① <u>정세분석 국</u> 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 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제11조(<u>정보분석국</u>) ① <u>정보분석 국</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6. ~ 8. (생략)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8의2. (생략)	8. (현행 제8의2호와 같음)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

제11조의2(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법령·제도의 수립·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종합·지원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조정·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5. 남북한 간 물품(인도적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관리·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삭 제

1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
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
조, 지원 및 관리

<신 설>

제12조(통일협력국) ① 통일협력
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
립·종합·조정
2. 국내외 통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
업체계 구축 및 지원
4.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개
발·보급
5. 통일·대북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6.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개발·보
급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등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8. 통일·대북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9.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
련 계획의 수립·시행

10.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1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
획·개발·보급

<삭 제>

제12조의2(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

단)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개성공업지구 등 남한과 북
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
협력지구”라 한다)의 개발, 관
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
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
괄·조정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연락 및 합의서 체결·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5.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반입 등의 승인
6. 남북협력지구의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 및 승인
7. 남북협력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8.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9.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의 개발기획 및 유지관리 지원
10.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노동·환경·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지원

11. 남북협력지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남북협력지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5.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14조(직무) 남북회담본부(이하 “회담본부”라 한다. 이 장에서

제3장 남북관계관리단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

같다)는 남북회담, 접촉 및 남한과 북한의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북 협상 대응전략 및 훈련 계획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대화·교류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남북대화 및 출입에 관한 긴급상황 처리 대책 및 안전·보안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남북대화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등 남북대화의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7. 남북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8.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판문점 등 남북한 간 출입과

관련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운영 및 출입·보안·통제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운용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및 조정
12. 남북교류 및 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의 수립
14. 남북교류 통계·동향의 종합·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남북교류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 수립 및 현안 대응
16.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령상 각종 승인·조정·수리 등에 관한 사항
17. 남북한이 합의하는 협력지구의 개발·관리·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 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정 및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본부장) ① 회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단장)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 -----. ③ 단장----- -----.	제15조(본부장) ① 회담본부에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연락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회담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회담기획부) ① 회담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 및 대북교섭 전략의 수립·조정 3.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4.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5.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	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하부조직) ① 회담본부에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		

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8. 남북회담 대표단의 구성 및 관리

9.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10. 남북관계 관련 다자 간 회담의 기획 및 지원

1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13.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4.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17.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제18조(회담운영연락부) ① 회담운영연락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 및 진행상황 관리

2.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남북회담사료의 보존·관리

4.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5.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6. 판문점지역 안의 동향 수집

7.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안의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지원

9.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0.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11. 판문점지역 안의 회담행사 지원

12.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13. 판문점견학지원센터의 관리·운영

<u>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u>	<u><삭 제></u>			
<u>제30조의4(직무) 남북출입사무소</u> <u>(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u> <u>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u> <u>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u> <u>무를 관장한다.</u> 1. <u>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 운영</u> <u>에 관한 사항의 총괄·기획</u> <u>및 조정</u> 2. <u>남북한간의 출입과 관련된</u> <u>각종 제도의 수립 및 개선</u> 3. <u>남북한간 출입계획의 접수,</u> <u>출입의 확인 및 통보</u> 4. <u>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u> <u>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u> <u>의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u> <u>수</u> 5. <u>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 운</u> <u>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u> <u>의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u> 6. <u>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u> <u>재발급</u> 7. <u>남북출입시설 안의 출입통제</u> <u>및 보안에 관한 사항</u>	<u><삭 제></u>		8. <u>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u> <u>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u> <u>연락에 관한 사항</u> 9. <u>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u> <u>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u> 10. <u>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u> <u>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u> <u>운영</u> 11. <u>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u> <u>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u> <u>사항</u> 12. <u>남북한간 출입장소 안의 행</u> <u>사지원에 관한 사항</u> 13. <u>남북출입시설 체험·견학</u> <u>등에 관한 사항</u> <u>제30조의5(소장) ① 사무소에 소</u> <u>장 1명을 둔다.</u> <u>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u> <u>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u> <u>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u> <u>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u>제30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u> <u>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u>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u> <u>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u>	<u><삭 제></u> <u><삭 제></u>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
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하
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
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
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27명

<삭 제>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삭제

⑤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
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7명

<삭 제>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 -- 3개 ----- -----.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남북회담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보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통일전략기획관) ① 통일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전략기획관을	제38조(통일기획관) ① ----- ----- ----- ----- 2024년 12월 31일----- ----- 통일기획관-----

둔다. ② 통일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일전략기획관은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생략)	-----. ② 통일기획관----- ----- -----. ③ 통일기획관----- -----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단)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단을 둔다.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통일미래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과) ① ----- ----- ----- 2024년 12월 31일----- ----- 통일미래추진과를 -----. ② 통일미래추진과에 과장 ----- ----- 과장----- --. ③ 통일미래추진과장----- -----.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이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수립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과제 연구·수립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수립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u>의제 개발 및 대북 협의 기획</u> <u>· 지원</u> 4. <u>통일 미래전략·구상 추진에 대한 평가·점검</u> 5. <u>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연구 및 조사</u> 6. <u>통일 미래전략·구상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u> 7. <u>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관계 부처·기관 및 국내외 협력</u> 8. <u>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u> 9. <u>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u> ④ <u>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u>은 별표 4와 같다. ⑤ <u>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u>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3338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u>	<u>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 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u> 5. <u>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 제 관련 관계 부처·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u> 6. <u>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u> 7. <u>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연구</u> ④ <u>통일미래추진과</u>----- -----. ⑤ <u>통일미래추진과</u>----- ----- -----. 대통령령 제3338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u><삭 제></u>	<u>개정규정에 따른 통일전략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전략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u>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 공무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으로 각각 본다.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09</u>	<u>273</u>	-36
·	·	·	
·	·	·	
일반직 계	<u>305</u>	<u>269</u>	-36
고위공무원단	<u>12</u>	<u>10</u>	-2
3급 또는 4급 이하	<u>287</u>	<u>251</u>	-36
전문경력관	6		
전문직공무원	<u><신 설></u>	<u>2</u>	+2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8</u>	<u>184</u>	-44
일반직 계	<u>228</u>	<u>184</u>	-44
고위공무원단	<u>6</u>	<u>3</u>	-3
3급 또는 4급 이하	<u>213</u>	<u>180</u>	-33
전문직공무원	<u>7</u>	<u><삭 제></u>	-7
전문경력관	<u>2</u>	<u>1</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7